

'99 군정질문 서면답변서

기획감사실

답 변 서

질문의원	송 인 옥 의원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답 변 자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제목 : 각종 행정 재송업무 처리에 대하여

□ 질문요지

첫째 우리군의 '98년부터 현재까지('99. 7월말) 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실적과 법률상담 실적은 ?

둘째 행정재송사건의 패소내역과 금후 승소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

□ 답 변

- 송인옥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행정재송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변화와 주민의식향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들의 권익 주장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행정분야도 주민들의 욕구분출과 함께 지역개발사업과 행정서비스 확대로 행정수요가 늘어 가면서 주민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로 재송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점증되리라고 예상됩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한 것은 없습니다.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한 고문변호사 운영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제도로써 재송 사건을 직접 수임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수행은 중대한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우리군과 검찰청 공익법무관이 공동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덜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은 우리군이 수행하며 다만, 민사합의사건인 경우는 당사자인 군수나 변호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사건관할법원 소재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케 하는데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지인 대전지역 변호사에게 '98년 1건, '99년 1건을 수임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실적은 쟁송의 대항력 제고를 위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 21건, 변론기술 22회를 자문받아 쟁송 승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타상담 5회등을 포함하여 각부서에서도 실무상 법령해석이 난이할 때에는 수시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법 타당한 행정을 펴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3회 35건에 대해 군민법률상담을 실시해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신장에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쟁송의 패소내역과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구별되는데 송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를 모두 포함해서 질문하신 취지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 7월말까지 우리군의 쟁송사건은 모두 21건으로서 국가소송 13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이중 우리군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 소송중이 11건(심급 승소 4건포함)인데 패소 2건중 1건은 국가소송, 1건은 일부패소한 민사소송으로서

국가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확인청구 사건으로서 외속리면 장재리 소재 사유 미등기토지를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상에는 망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 등이 미기재되어 있어 상속등기를 위해 동일인임을 증명받고자 하나 외속리면사무소 화재로 제적부가 소실되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재판부가 동일인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고

민사사건인 손해배상사건은 내속리면 하판리 인삼밭 피해 배상건인데 강우로 피해를 본 것은 인정하는데 보은군이 받기반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시행을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다는 과실상계율이 적용되어 일부 패소한 사건으로써 위법이나 행정의 탈루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률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 행정의 손실을 막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신뢰행정을 위해서는 적법타당한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실무부서에 법규나 업무연찬을 더 하계 하고
법무담당부서의 밀도있는 심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법령을 적용케 하고 공사
시행부서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견실시공을 하도록 지휘감독을
강화하여 행정의 시발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탈루·
부실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고 쟁송과 관련하여서도 고문변호사와
유대를 더한층 긴밀히 하여 쟁송승소율을 높이는 신뢰받는
행정, 손실없는 행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
습니다.